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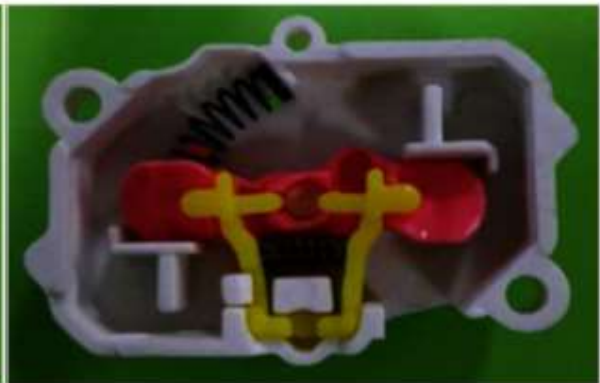
[특허분쟁] 특허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나1527 판결



[사진 1, 이 사건 특허발명 제품]



[사진 2, 피고 실시제품]



|   | 이 사건 특허발명 | 피고 실시제품 |
|---|-----------|---------|
| <p>플러그 삽입시</p> <p>(하늘색 화살표가 제어구 및 지지구가 압력을 받는 방향을 표시)</p>   |           |         |
| <p>플러그 해제시</p> <p>(보라색 화살표가 제어구 또는 지지구가 복원력을 받는 방향을 표시)</p> |           |         |

| 구성요소 | 이 사건 제1항 발명   | 피고 실시제품   |
|------|---|---|
| 전제부  | 접점단자(15)의 상부에 형성되는 통공(10)과, 콘센트커버(2)에 형성되는 플러그 삽입구멍(21)의 사이에 상기 통공(10)을 선택적으로 폐색시키는 개폐구(4)가 설치되어 구성되는 것에 있어서, | 접지단자인 나이프어댑터(9)의 상부에 형성되는 단자삽입구멍(21)과, 상부케이스(3)에 형성되는 접지구멍(3b)의 사이에 단자삽입구멍(21)을 폐색시키는 개폐구(100)가 설치되어 구성 |
| 1    | 상기 개폐구(4)에 개폐구의 작동을 제어하는 시건장치(5)를 설치시키며,  | 개폐구의 회전을 구속하는 지지구(200)  |
| 2    | 개폐구(4)와 시건장치(5)가 플러그의 삽입에 의해 작동되게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센트   | 개폐구(100)와 지지구(200)는 플러그의 삽입에 의해 작동  |

먼저 원고 특허 1항 발명과 피고 실시제품을 구성요소별로 대비하면, 접점단자의 상부에 형성되는 통공과 콘센트커버에 형성되는 플러그 삽입구멍의 사이에 통공을 폐색시키는

개폐구가 설치되고, 개폐구의 작동을 제어하는 시건장치를 포함하며, 개폐구와 시건장치는 플러그의 삽입에 의해 작동되도록 구성된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피고실시제품을 선행발명과 대비하면 구성요소가 동일하고, 작용효과 면에서도 이물질 삽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슬라이딩 부재의 잘못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이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

| 구성 요소 | 이 사건 제3항 발명  | 피고 실시제품   |
|-------|--|---|
| 3-1   | 개폐구(4)는 회전축(11)에 의해 설치되고 축(11)을 중심으로 하는 회전 방향으로 경사면(40)이 형성되어 있으며, | 개폐구(100)는 보스(23)에 의해 설치되고 보스(23) 축을 중심으로 하는 회전 방향으로 경사부(121)가 형성  |
| 3-2   | 시건장치(5)는 개폐구(4)의 경사면(40) 양측 하부에 형성되는 걸림홈(42)과 제어구(50)로 구성되고,       | 개폐구(100)의 경사부(121) 내측면에 형성되는 메인걸림홈부(123), 개폐구(100)의 회전지지부(130) 양 측면에 형성되는 보조걸림홈부(133a)와 일체형의 지지구(200)로 구성   |
| 3-3   | 제어구(50)는 탄성판(501)과 이에 형성된 걸림돌기(51)와 해제돌기(52)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콘센트     | 지지구(200)는 압축이완부(211), 압축이완부의 외면에 형성된 걸림돌기(223) 및 작동돌기(221), 압축이완부의 내면에 형성된 제2걸림부(230) 및 삽입돌기(213), 압축이완부의 내면 사이에 마련되고 삽입돌기(213)에 의하여 지지되는 제2탄성부재(240)로 구성 |

다음으로 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3항 발명의 걸림홈과 피고 실시제품의 메인걸림홈부와 보조걸림홈부(차이점1)는 금속막대 등이 임의로 삽입되어 개

폐구가 돌아 감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걸림작용'을 일으키기 위해 형성된 점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의 해결원리 및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구성 변경에 기술적 어려움이 없어 균등범위 내에 있다.

그런데 피고 실시제품의 지지구에는 압축이완부 내면에 스프링재질의 제2탄성부재가 삽입되어 있고, 제2탄성부재를 지지하는 삽입돌기가 형성되어 있어(차이점2) 아래와 같은 이유로 3항 발명과 균등하지 않다. 제3항 발명의 지지구는 2개의 플러그가 2개의 제어구에 각각 압력을 가하고, 제어구가 바깥쪽으로 벌어지면서 결합돌기가 해제되는 구조로, 플러그의 삽입에 따른 제어구 외벽에 결합된 탄성판의 확장/복원력을 이용하는 것을 과제해결원리로 삼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 실시제품의 지지구는, 제3항 발명과 달리 2개의 플러그가 1개의 지지구의 안쪽으로 가하는 압력의 유무에 따라 지지구 내부에 있는 제2탄성부재의 압축/회복에 영향을 주어 개폐를 조절하는 점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는 그 작동원리가 다르다.

제3항 발명의 제어구는 탄성판의 복원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플러그의 잦은 삽입 등으로 탄성판이 변형될 개연성이 있는 반면, 피고 실시제품의 지지구는, 지지구가 아닌 지지구 끝단 사이에 연결된 코일스프링의 탄성력을 이용하여 작동되기 때문에 플러그나 외부 물

질이 자주 삽입되더라도 이 사건 제3항 발명에 비해서는 압축이완부나 코일스프링이 변형될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작용효과 면에서 차이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피고 실시제품은 제어구(지지구)의 개수, 이에 따른 걸림돌기와 해제돌기의 개수, 몸체(탄성판/압축이완부)의 형상, 코일스프링 형태의 제2탄성부재의 존부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구성요소의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의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구성변경도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두 발명이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실시제품은 원고 특허 3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원고의 1항 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피고 실시제품이 원고의 특허를 침해함을 전제로 한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나1527 판결

변리사 23년/변호사 15년, 특허심판소송, 민형사소송, 손해배상, One-Stop Service

T. 02-591-0657 E. [kkh@kasanlaw.com](mailto: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http://www.kasanlaw.com)